

자유전공학부 운영 내규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자유전공학부 운영 내규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운영 내규는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합리적인 학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“자유전공”이란 입학시 전공을 정하지 않고 전공 탐색 과정을 거쳐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함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①이 규정은 2025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유전공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다.
②자유전공학부생 중 전공 선택을 통해 진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 내규에 따른다.

제2장 전공 선택

제2조 (전공 선택) 전공 선택은 학칙 제7장에 따른다.

- ①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총 2개 학기를 이수하고, 2학년 진급 전 반드시 제1전공 및 제2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.
- ②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단과대학 내 학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.
- ③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각 단과대학 내 모든 전공 및 학과를 제2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. 단, 항공운항학과 선발인원 및 선발 조건은 제3조의 기준을 따른다.

제3조 (항공운항학과(제2전공) 선발 기준)

- ① 제2전공으로 항공운항학과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의 선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, 학교 정책에 따라 선발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.
- ② 2025학번 및 2026학번의 항공운항학과(제2전공)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내용
선발인원	입학정원의 20% 이내
선발기준	항공운항학과 전과 기준
선발요건	전과기준을 충족한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1종 적합자 (교과성적 70%, 영어공인(TOEIC)점수 30% 반영)

③ 2027학번 이후의 항공운항학과(제2전공)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내용
선발인원	입학정원의 10% 이내
선발기준	항공운항학과 전과 기준
선발요건	전과기준을 충족한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1종 적합자 (교과성적 70%, 영어공인(TOEIC)점수 30% 반영)

제3장 교과목 이수 및 졸업

제4조 (필수 교양과목 이수) ① 1학년 과정 중 필수 교양과목 이수는 매학년도 교무처 교과목 개설계획에 따른다.

② 필수 교양과목은 해당 학년 학기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 (전공 기초과목 이수)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진입하고자 하는 전공의 기초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

제6조 (졸업)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졸업요건은 진입한 전공의 운영 내규 및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4장 학사 및 장학

제7조 (학사지도) ①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AA(Academic Advisor)교수에게 수강 지도, 학업상담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.

② 자유전공학부학생은 MA(Major Advisor)교수에게 전공 선택 및 진로 등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다.

제8조 (장학금) 장학금의 지급은 학칙 제61조(장학금의 지급) 및 본교 장학금 지급 규정,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며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 성적순으로 지급한다.

① 직전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

② 평점평균 3.5 이상인 자

제9조(장학금 동점자 처리규정) 제8조에 따른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,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.

① 총 이수학점이 많은 자

② 누적평점이 높은 자

- ③ 필수학점이 많은 자
- ④ 공인외국어 성적 점수가 높은 자

제5장 학부운영위원회

제10조 (위원회 구성 및 역할) ① 학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자유전공학부장과 자유전공학부 AA교수로 구성하며, 학부장이 위원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교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2. 본 운영 내규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학부 운영 및 학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

제6장 보칙

제11조 (준용)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2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- ② (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의 폐지) 기존 자유전공학부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여 이 운영내규를 적용한다.
- ③ (전공자율선택제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내규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,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학과 내규를 적용한다. 자유전공학부(전계열) 운영 내규 및 자유전공학부(공학계열) 운영 내규는 202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대상 학생 전원이 졸업할 시 실효된다.